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

제84호 '26.3.

수입검사관련 정보

◆ 수입식품등 검사지시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품목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8">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</td><td rowspan="6">가공식품등</td><td>○ 베트남(제조·수출업소 SIMEXCO DAKLAK LTD) / 농산물흑후추(열매, 건조), 가공식품천연향신료(후추 100%에 한함) / 수단색소</td></tr>
<tr><td>○ 유럽 등에서 회수 중인 영유아용 조제분유·조제식* 수입신고 시 반려 조치/ 가공식품·축산물가공품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(341개)
※ '제조국'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, 제품명, 제조회사명으로 모든 제조국에 대해 적용
* '바실러스세레우스' 및 생성독소 '세레울리드' 존재 가능성에 따른 예방 조치</td></tr>
<tr><td>○ 중국(해외제조업소 ANHUI INTCO MEDICAL PRODUCT.,LTD) / 고무제 / 총용출량</td></tr>
<tr><td>○ 태국(해외제조업소 SURAT SEAFOODS CO.,LTD, TH000006657) / 새우 제품(생식용, 처리형태 불문) / 대장균</td></tr>
<tr><td>○ Mortierella alpina 오일 20% 이상 함유 제품(원료성 제품에 한함) / 세레울라이드 검사성적서 매 수입시 제출(세레울라이드 불검출 확인) (2026.2.3. 선적분부터 적용)</td></tr>
<tr><td>○ 인도(해외제조업소 DRYTECH PROCESSES INDIA PVT LTD) / 아라비아검(식품첨가물) / 순도시험(탄닌함유검질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농·축·수산물</td><td>○ 대만(PLANTIN) / 곰보버섯(자실체, 건조) / 클로티아니딘(Clotianidin)
○ 태국(제조·수출업소 LUCKY TURTLE CO., LTD) / 농산물두리안(열매,신선), 가공식품두리안(100%에 한함) / 프로사이미돈(Procymidone)
○ 미국(수출업소 ADM RICE INC) / 멥쌀(씨앗) / 현장검사(곰팡이 발생, 덩어리화, 변패 및 이취 여부 확인 등)
○ 브라질(해외작업장 SAO SALVADOR ALIMENTOS S/A(Est no. SIF 3404)) / 닭고기(부산물 포함) / 동물용의약품 155종
○ 수입농산물 단성분 농약검사 강화 ('26.3.3.~6.30.(접수일기준))
<table>
<tr><th colspan="3">농약명</th><th>품목</th><th>국내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아피도피로펜</td><td>Afidopyropen</td><td>무(뿌리)</td><td>0.05</td></tr>
<tr><td>2</td><td>딤프로피리다즈</td><td>Dimpropyridaz</td><td>브로콜리</td><td>0.03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3</td><td rowspan="2">아이소페타미드</td><td rowspan="2">Isofetamid</td><td>가지</td><td>0.03</td></tr>
<tr><td>멜론</td><td>0.03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4</td><td rowspan="4">글리포세이트</td><td>Glyphosate</td><td>당근</td><td>0.05</td></tr>
<tr><td>Glyphosate</td><td>메밀</td><td>0.05</td></tr>
<tr><td>Glyphosate</td><td>밀</td><td>5.0†</td></tr>
<tr><td>Glyphosate</td><td>참깨</td><td>0.05</td></tr>
</table>
– 최초수입품에 적용, 지방청 시험분석 부서에서 검사하나 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 민관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</td></tr>
</table>

이 달의 보도자료

식약처,
유전자변형식품(GMO)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

- 「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2.27.~4.30.)
- 간장은 '26.12.31. 즉시 시행, 당류·식용유지류는 '27.12.31.부터 시행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간장, 당류 및 식용유지류**를 **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대상**으로 **확대**하는 내용의 **「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안**을 **2월 27일 행정예고** 했다.

식약처는 지난해 **유전자변형식품(GMO) 완전표시제**의 법률 근거가 마련*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**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, 업계·소비자·학계 협의 등**을 통해 **세부기준**을 마련하고 **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**을 거쳐 **개정안**을 **마련**하였다.

*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(개정·공포 '25. 12. 30., 시행 '26. 12. 31.)

현재는 「식품위생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·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(GMO)으로 표시하고 있다. 개정안에 따르면 **식품용**으로 승인된 **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**을 **원재료**로 **사용**하여 **제조·가공**한 **간장, 당류 및 식용유지류***는 제조·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**유전자변형식품(GMO)**으로 **표시****해야 한다.

* 식품유형이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간장, 당류 및 식용유지류인 식품
** "유전자변형식품", "유전자변형 ○○ 포함", "유전자변형 ○○ 포함가능성 있음" 등

다만 현장에 **제도**가 **안정적**으로 **정착**될 수 있도록 **업계**의 **준비기간 등**을 **고려**하여 **단계적**으로 **시행**한다.

간장은 **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**하고, 구분 관리를 위한 **시설 개보수** 등이 필요한 **당류**와 **식용유지류**는 **2027년 12월 31일부터** 시행된다.

<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대상 식품군 및 시행시기>

식품군	간장	당류	식용유지류
식품 유형	한식간장, 양조간장, 산분해간장, 효소분해간장, 혼합간장, 혼합장, 기타 장류	**설탕류**(설탕, 기타설탕), **당시럽류, 올리고당류**(올리고당, 올리고당 가공품), **포도당, 과당류**(과당, 기타과당), **엿류**(물엿, 기타엿, 덱스트린), **당류가공품**	**식물성유지류**(대두유, 옥배유, 카놀라유, 면실유 등), **동물성유지류**(식용우지·돈지 등), **식용유지가공품**(혼합식용유, 향미유, 쇼트닝, 마가린 등)
시행 시기	'26.12.31.부터	'27.12.31.부터	

식약처는 이번 **개정안**이 **전문가**와 **이해관계자**의 **폭넓은 의견 수렴**을 바탕으로 **마련**된 만큼, **소비자**의 **알권리**와 **선택권**이 한층 **강화**될 수 있도록 **현장**과 **지속적**으로 **소통**하며 **합리적**인 **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제도**를 **운영**해 나갈 계획이다.

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'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/행정예고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**개정안**에 대해 **의견**이 있는 경우 **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**할 수 있다.

<붙임> 주요 질의응답

담당 부서	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호동 (043-719-2191)
		담당자	사무관	서동훈 (043-719-2194)

붙임 주요 질의응답

Q1 우리나라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?

☞ 국제기준에 따라 독성, 알레르기, 영양성 등
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
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
대두(콩), 옥수수, 면화, 카놀라, 알팔파, 사탕무 6종임

☞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지 않음

Q2 간장, 당류,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대상으로 정한 이유는?

☞ 간장,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
소비자·시민단체에서 GMO 표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
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*에서 논의된 품목임

* GMO 표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업계, 소비자·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

Q3 참기름, 올리브유도 GMO 표시대상인가요?

☞ 참기름, 올리브유는 식용유지류에는 포함되나,
원재료인 참깨, 올리브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승인되어 있지 않아
실질적으로 GMO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Q4 당류·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?

☞ GMO 원재료를 일부 사용하는 당류·식용유지류는
GMO와 Non-GMO 원재료의 보관·제조과정 등에서
구분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,
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

Q5 간장, 당류, 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는데, 이들 표시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?

☞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, 당류, 식용유지류의 경우
원재료 기반 사후관리가 필요함

☞ 따라서 최종 제품이 구분관리 제조되었다는 증명서와 함께
원재료에 대한 증빙서류*를 통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

* 구분유통증명서, 정부증명서, 시험검사성적서

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...
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

-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'26.2.13.~4.14.)
- 국제기준(CODEX)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
- 구연산아연, 당산제이철 등 영양강화제 신규지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**감미료 6종**의 **사용대상식품**과 **사용량**을 **명확히 하는 등**의 내용을 담은 **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안**을 **2월 13일 행정예고**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최근 **제로슈거**(Zero Sugar) **식품 소비**가 **늘어남**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**감미료**의 **사용기준**을 **명확히** 하고, 아연·철을 보충하는 **영양강화제**를 **새로이 등재**하는 등 **다양한 식품 개발**을 **지원**하는 한편, **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**로 **사용**이 **우려**되는 **향료물질**의 **안전관리**를 **강화**하기 위한 목적이다.

< 주요 개정 내용 >

① 수크랄로스,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 세분화, 사용량 설정
② 구연산아연,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 확대
③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

< 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및 사용량 설정 >

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*의 **사용대상식품**과 **사용량**을 구체적으로 **정하여** 식품 제조 시 **과도한 감미료 사용**을 **예방**하고, **국민**의 **건강한 식품 소비**를 **유도**한다.

* 수크랄로스, 아세설팜칼륨, 아스파탐, 스테비올배당체, 효소처리스테비아, 에리스리톨

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**지난해** 식약처는 **감미료 22종**의 **국민 섭취수준, 국내외 관리 현황 등**을 **재평가**하였다.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(ADI)*이 설정된 **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**의 **국민 섭취량**은 **1일섭취허용량(ADI) 대비 0.49~12.71%**로 **안전**한 **수준**으로 밝혀졌다.

* 1일섭취허용량(Acceptable daily intake) :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

반면 감미료는 ▲국내 **생산·수입**이 지속적으로 **증가***하고 있어 **향후 국민 섭취수준**이 **높아질 것**으로 예상되는 점 **▲유럽연합(EU), CODEX 등**은 **식품별 사용량**을 **제한**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, 식약처는 국제기준과 맞춰 **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** 사용대상식품을 **세분화**하고 **사용량**을 **구체화**할 예정이다.

* ('20년) 3,364톤 → ('22년) 7,327톤 → ('24년) 13,276톤

구체적으로 **수크랄로스**는 **과자**에 대한 **사용량**을 **강화**(1.8g/kg 이하→1.6g/kg 이하)하고, **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**의 **사용량**을 **0.58g/kg**으로 정한다. **아세설팜칼륨**은 **빙과·아이스크림**의 **사용량**을 **강화**(1.0g/kg 이하→0.8g/kg 이하)하고, **빵류·떡류 등 16개 식품유형**의 **사용량**을 **0.35g/kg 이하**로 정한다.

아스파탐, 스테비올배당체, 효소처리스테비아는 **사용대상식품**을 각각 **빵류·추잉껌 등 37개, 과자 등 35개, 캔디류 등 44개** 식품유형으로 **세분화**하고, **식품유형별 사용량**을 0.03~12.0g/kg으로 **설정**한다.

또한, **에리스리톨** 등 **당알코올 10종***은 과량 섭취로 인해 **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**한다.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**에리스리톨**은 **16g/kg 이하****로 **사용량**을 **제한**한다.

* 에리스리톨, 락티톨, 만니톨, D-말티톨, 말티톨액, D-소비톨, D-소비톨액, 이소말트, 자일리톨, 폴리글리시톨액

** 음료류는 제품 특성상 단시간에 과량 섭취할 수 있어 CODEX, EU도 16g/kg이하로 설정

< 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등 사용기준 완화 >

구연산아연과 **당산제이철***은 **영양강화제 용도**로 **식품**과 **건강기능식품**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**신규 지정**한다.

* 기존 아연·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·냄새가 적어 식품에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 등 우수

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, 암·장질환 등 환자도 **불소 섭취**가 **부족**할 수 있어 **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**할 수 있도록 **완화**한다.

또한, **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**의 발효과정에서 **미생물의 생육 방지** 등을 위해 사용하는 **아황산염류***의 **잔류기준**을 현행 0.030g/kg에서 **국제기준**과 같은 **0.20g/kg 미만**으로 **완화**한다.

* 무수아황산, 메타중아황산나트륨(칼륨), 산성아황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

<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>

수면질 개선 등 **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, 감마부티로락톤**은 **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**하도록 **사용량**을 **제한***하고, **매스틱**은 **특유**의 **향이 없어 착향료**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**천연향료**의 **기원물질**에서 **삭제**한다.

* (현행) 착향 목적 기술적 필요량→(개정) 착향 목적 한해, 가바 500mg/kg, 감마부티로락톤 10mg/kg 이하

식약처는 앞으로도 **급변하는 환경**에 **선제적**으로 **대응**하여 **식품첨가물의 기준·규격**을 **합리적**으로 **개선**하고 국민의 **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**과 업계의 **다양한 식품 개발**을 **적극 지원**할 계획이다.

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*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**개정(안)에 대한 의견**은 **2026년 4월 14일까지 제출**할 수 있다.

* 식약처 누리집 (https://mfds.go.kr) > 법령·자료 > 입법/행정예고

담당 부서 <총 괄>	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	책임자	과 장	엄미옥 (043-719-2501)
		담당자	연구관	박나영 (043-719-2503)
담당 부서 <협 조>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	책임자	과 장	최윤주 (043-719-4351)
		담당자	연구관	김미라 (043-719-4352)

붙임 1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(안) 주요내용

품목명	현행	개정(안)
수크랄로스	• 과자(1.8g/kg) 등 9개 식품 : 0.32 ~ 12g/kg •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: 0.58g/kg	• **과자(1.6g/kg)**, 그 외 식품 동일 • **캔디류 등 21개 식품: 0.58g/kg 이하**
아세설팜칼륨	• 빙과·아이스크림(1.0g/kg) 등 9개 식품 : 0.45 ~ 15g/kg •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: 0.35g/kg 이하	• **빙과·아이스크림(0.8g/kg)**, 그 외 식품 동일 • **빵류, 떡류 등 16개 식품 : 0.35g/kg 이하**
아스파탐	• 빵류 등 5개 식품 : 0.8 ~ 5.5g/kg •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: 기술적 필요량	• **빵류, 추잉껌 등 37개 식품 : 0.35 ~ 12.0g/kg 이하** * 건강기능식품, 설탕대체식품 : 기술적 필요량
스테비올배당체	• 모든 식품(설탕, 포도당, 물엿, 벌꿀류 제외) : 기술적 필요량	• **과자, 캔디류 등 35개 식품 : 0.15 ~ 4.5g/kg 이하** * 건강기능식품, 설탕대체식품 : 기술적 필요량
효소처리스테비아	• 모든 식품(설탕, 포도당, 물엿, 벌꿀류 제외) : 기술적 필요량	• **과자, 캔디류 등 44개 식품 : 0.03 ~ 5.0g/kg 이하** * 건강기능식품, 설탕대체식품 : 기술적 필요량
에리스리톨	• 모든 식품 : 기술적 필요량	• **음료류 : 16g/kg 이하,** 그 외 식품 : 기술적 필요량
당알코올류	-	• 당알코올류*는 과량 섭취로 인한 **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**하여야 한다. * 에리스리톨, 락티톨, 만니톨, D-말티톨, 말티톨액, D-소비톨, D-소비톨액, 이소말트, 자일리톨, 폴리글리시톨액

붙임 2 감미료(6종)의 섭취수준 및 생산 · 수입량 현황

○ 감미료별 섭취수준 평가결과

품목명	1일섭취허용량(ADI) (mg/kg 체중/일)	섭취량 (mg/kg 체중/일)	ADI 대비 % (섭취량/ADI)
수크랄로스	15	0.074	**0.49**
아세설팜칼륨	9	0.237	**2.63**
아스파탐	40	0.351	**0.88**
스테비올배당체	4	0.038	**0.95**
효소처리스테비아	4	0.508	**12.71**
에리스리톨	500	6.750	**1.35**

○ 감미료별 생산·수입량 현황

* 단위 : 톤

품목명	'20년	'22년	'24년
수크랄로스	122.2	241.3	430.7
아세설팜칼륨	67.7	153.8	199.8
아스파탐	118.7	194.1	203.9
스테비올배당체	406.6	415.0	291.0
효소처리스테비아	1180.3	1826.4	1951.1
에리스리톨	1468.4	4496.1	10199.5
합계	**3363.9**	**7326.7**	**13276.0**

법령 등 개정 사항

◆ 「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(제2026-107호, 의견조회중 2026.3.17.까지)

○ 주요내용

가. 세척제의 개별기준 및 규격 [안 제3. 1. 3)제조기준] 「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」중 제3. 개별기준 및 규격, 1. 세척제, 3)제조기준의 '(4) 과일·채소용 세척제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(KS) 수질-액상백지에서 유기물의 "최종"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-용존 유기탄소 분석법(KS I ISO 7827)'에 따라 '2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% 이상이어야 한다.'를 삭제

◆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제2026-084호, 의견조회중 2026.4.14.까지)

○ 주요내용

가.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확대 (안 Ⅲ. 품목별 사용기준, Ⅳ. 품목별 성분규격)

- 영양강화제인 구연산아연 및 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허용
- 불화나트륨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

나.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 (안 Ⅰ. 총칙, Ⅲ. 품목별 사용기준, Ⅳ. 품목별 성분규격, [별표 1]의 [표 2])

- 벌꿀을 발효하여 제조하는 기타주류에 대해 메타중아황산나트륨, 메타중아황산칼륨, 무수아황산, 산성아황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에 대한 잔류기준 완화
- 락티톨 등 8품목의 주용도(증점제) 추가
- 젖산의 주용도에 향료 추가 및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젖산 신설
- 감색소 등 착색료 52품목의 사용기준에서 '조미고추장'을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상의 식품유형으로 개정
-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및 글루콘산칼슘의 사용기준 자구 수정

다.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 (안 Ⅲ. 품목별 사용기준, Ⅳ. 품목별 성분규격)

- 트리폴리인산나트륨과 트리폴리인산칼륨을 신규 지정, 메타인산칼륨을 폴리인산칼륨으로 통합
- 메타인산나트륨과 폴리인산나트륨의 함량, 확인시험 등 성분규격 개선
- 메타인산나트륨의 시험법을 인용한 82품목의 성분규격을 폴리인산나트륨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
- 프로필렌글리콜 및 효모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개선, 향료의 제조용매로 물, 이산화탄소 허용 및 과산화초산의 함량 규격 개선
- 토마틴 및 용성비타민P의 국문명칭을 정정, 변성전분, 젖산칼슘, 폴리비닐피로리돈, 황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등에 INS No. 및 CAS No. 추가

라.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 (안 Ⅲ. 품목별 사용기준)

- 락티톨 등 당알코올 10품목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공통기준 신설

 * 락티톨, 만니톨, D-말티톨, 말티톨액, D-소비톨, D-소비톨액, 에리스리톨, 이소말트, 자일리톨, 폴리글리시톨액

- 수크랄로스,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

마.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 (안 Ⅳ. 품목별 성분규격, Ⅴ. 일반시험법, Ⅵ. 시약·시액·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)

-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등 10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시험법 개선
- 일반시험법 중 비중측정법으로 진동식밀도계 측정법 추가

알려드립니다

◆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

○ 재지정 대상

구분	일련번호 (최초지정일)	대상 식품	국가	검사항목	검사명령 기간
변경 (전)	제2025-1 (2016.2.29)	천연향신료 (분말형태의 제품)	인도	금속성이물	'25.3.1. ~'26.2.28.
변경 (후)	제2026-1 (2016.2.29)	천연향신료 (분말형태의 제품)			'26.3.1. ~'27.2.28.

○ 검사방법: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

* 검체 채취는 시험·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

◆ 「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」 개정 알림

○ 우리 처(식품표시광고정책과)는 식품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업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.

○ 다운로드: 식약처 누리집(mfds.go.kr) > 법령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

◆ EU산 축산물가공품(동물성 식품 포함) 전자위생증명 시범운영 알림

○ 관련: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8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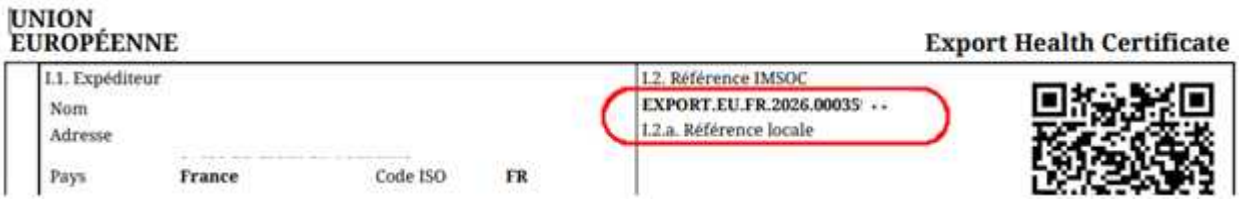
가. 대상품목: '(수출위생증명서 서식) EU 축산물가공품 및 동물성 식품 조화 수출위생증명서'로 발행한 유가공품, 알가공품, 멸균식육가공품 및 (동물성 식품 중 알함유가공품, 멸균식육함유가공품)

나. 대상국가: EU 27개 회원국 중 25개 국가 (스페인, 네덜란드 제외) * 상세 국가 하단 표 참고

다. 시행일: '26.3.1.부터(증명서 발행일 기준)

라. 방 법: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(종이 원본) 제출(필수★)하면서, 관세청 통관단일창구(Unipass)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 전자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

* EU 전자증명번호 작성 예시(온점(.) 제외 입력) : EXPORTEUFR2026OOO35**(하단 참조)


UNION EUROPÉENNE

Export Health Certificate

I.1. Expéditeur

Nom

Adresse

Pays France Code ISO FR

I.2. Référence IMSOC

EXPORT.EU.FR.2026.00035' ..

I.2.a. Référence locale

마. 유의사항: 스페인, 네덜란드는 시범운영 대상 국가가 아님에 따라 수입신고 시 'EU 축산물가공품 및 동물성 식품 조화 수출위생증명서'(종이 원본) 제출(증명서 발급일 기준 3.1일 이후)하고, 전자위생증명서 번호는 입력하지 않음

○ 참고 1: 시범운영 대상국가

연번	EU 회원국(27개국)	시범운영 대상 EU 회원국(22개국)	수입신고 시 유의사항
1	그리스	그리스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2	덴마크	덴마크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3	독일	독일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4	라트비아	라트비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5	룩셈부르크	룩셈부르크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6	리투아니아	리투아니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7	벨기에	벨기에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8	불가리아	불가리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9	스웨덴	스웨덴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0	슬로바키아	슬로바키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1	아일랜드	아일랜드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2	에스토니아	에스토니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3	오스트리아	오스트리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4	이탈리아	이탈리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5	체코	체코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6	크로아티아	크로아티아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7	키프로스	키프로스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8	포르투갈	포르투갈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19	폴란드	폴란드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20	프랑스	프랑스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21	핀란드	핀란드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22	헝가리	헝가리	원본 제출 + 증명번호 입력
23	네덜란드	시범운영 미참여	원본 제출
24	스페인	시범운영 미참여	원본 제출
25	루마니아	수입 미허용 국가	-
26	몰타	수입 미허용 국가	-
27	슬로베니아	수입 미허용 국가	-

○ 참고 2: ’26년 2월 기준, 수입축산물 전자위생증명 적용 및 시범운영 현황

< 적용 완료 >

- ('21. 7월~) 호주산 식육
- ('22. 8월~) 칠레산 식육
- ('22. 8월~) 태국산 축산물
- ('24. 8월~) 뉴질랜드산 축산물

< 시범운영 >

- ('24. 2월~) 브라질산 축산물(시범운영)
- ('25. 8월~) 호주산 유가공품(시범운영)
- ('26. 3월~) EU산 유가공품, 알가공품, 멸균식육가공품(시범운영)
 (동물성 식품(알함유가공품, 멸균식육함유가공품) 포함)

○ 관련문의: 수입검사관리과(043-719-2221)

[붙임 1] 수입검사 뉴스레터 신청서

◇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는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메일서비스(PMS; Policy Mail Service)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◇ 정책메일서비스(PMS)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,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**수입관리과 팩스 (02-2110-0815)로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책메일서비스(PMS)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1. 성명 (필수)	
2. E-mail (필수)	
3. 업소명 (필수)	
4. 관심분야(업종) (중복선택 가능)	1)수입식품() 2)축산물() 3)수산물() 4)위생용품() 5)신고대행업() 6)보관업()

▶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** :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(PMS) 등 제공

※ 수집·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
▶ **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** : 성명, E-mail, 업소명

▶ **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** : 2년

(2년 주기로 재동의 안내 메일 송부,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파기)

▶ **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**

☞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PMS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 () 동의하지 않음()

년 월 일

성명 : _____(서명 또는 인)

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전화 02-2110-8159 팩스 02-2110-0815